

---

# 2026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민간 실증사업 안내서

---

---

\* TRYOUT: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사업 통합 브랜드 네임으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 검증한다는 의미

---

2026. 4. 23.

# 목 차

<b>I. 사업 개요</b> .....	1
1.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	1
2.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1
3. 추진절차 .....	3
<b>II. 사업 세부내용</b> .....	4
1. 지원사항 및 지원유형 .....	4
2. 협력파트너 수요기술 .....	6
3. 협력파트너 실증자원 .....	6
4. 수행기관 선정절차(평가 등) .....	8
5. 사업 운영사항 .....	10
<b>III. 신청서 제출안내</b> .....	12
1. 사업 신청방법 .....	12
2. 사업 유의사항 .....	14
3. 문의처 .....	16
붙임자료 1 : 기술성숙도(TRL) 단계별 정의 및 요구사항 .....	17
붙임자료 2 : 신산업 창업 분야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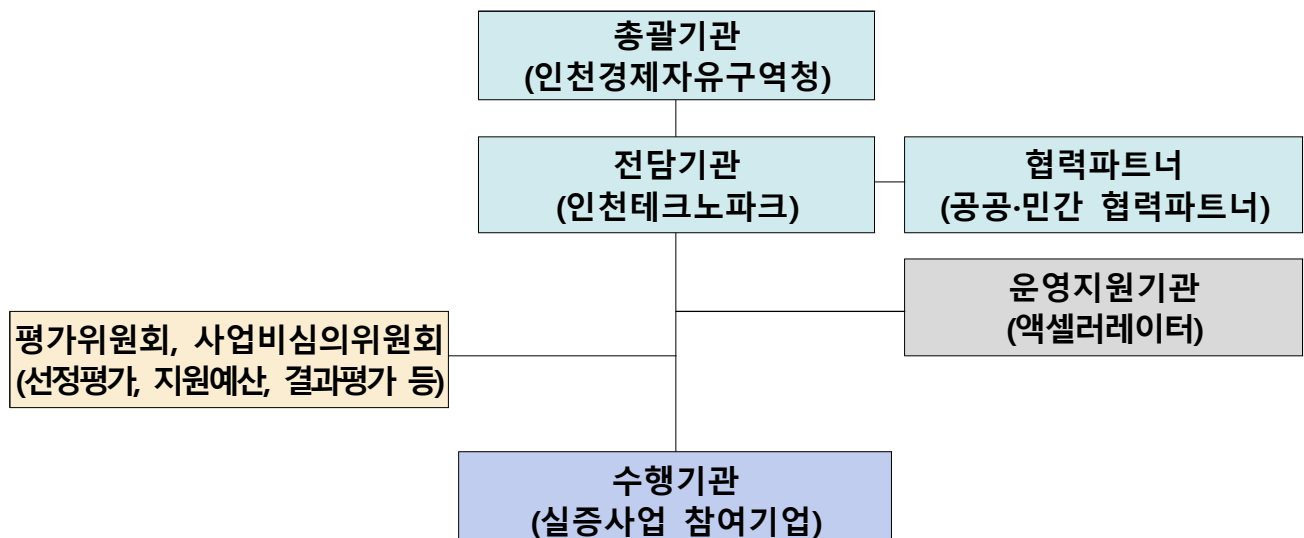
# I. 사업 개요

## 1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 추진목적: 민간 협력파트너 특화 실증 자원 및 실증자금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조기상용화 지원
- 사업명: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민간 실증사업
- 지원규모: 3억원 내외(파트너당 1~3개사 내외, 1개사당 평균 30백만원)  
※ 사업비 심의위원회의 실증계획에 대한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최대 5천만원**
- 지원기간: 협약일 ~ '26. 11. 30. (약 5개월)
- 지원내용
  -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민간 협력파트너의 실증자원 (공간, 인프라, 플랫폼, 전문가 등)을 제공하고 제품 및 서비스 실증에 필요한 실증비용(인건비, 설치비, 철거비, 재료비 등) 지원
  - 협력파트너(14개 민간대기업)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요기술 및 실증 인프라를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환경에서 유효성 검증 지원

## 2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추진체계



## □ 기관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총괄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총괄 기획 및 추진방침 수립</li> <li>○ 사업내용, 범위 확정 및 예산확보</li> <li>○ 전담기관 운영사항에 관한 지도 점검 등</li> </ul>
전담기관 (인천테크노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사업 운영관리(공고, 선정, 평가, 성과 등)</li> <li>○ 사업 예산관리(실증비용 지원 및 정산관리 등)</li> <li>○ 실증사업 수요기술 매칭 기업 모집 및 선정</li> <li>○ 협력파트너 협업체계 구축 및 기업 실증, 성과 관리</li> </ul>
협력기관 (공공·민간 부문 협력파트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증자원 제공 및 수요기술 발굴</li> <li>○ 제품·서비스 현장설치 및 적용에 관한 실증 지원</li> <li>○ 우수 실증제품에 관한 도입 및 확산 지원 등</li> </ul>
운영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YOUT 민간 실증 선정기업 실증 지원(컨설팅, 커스터마이징 등)</li> <li>○ 수행기관 대상 운영지원사 프로그램 연계 검토</li> <li>○ 지원기업 성과조사, 만족도 조사 등</li> </ul>
평가위원회, 사업비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행계획 검토 및 선정</li> <li>○ 사업 수행결과(실증 KPI, 수행방법 등) 평가</li> <li>○ 실증계획(난이도)에 따른 예산 조정 및 확정</li> <li>○ 수행결과 평가 및 실증확인서 발급 대상 확정 등</li> <li>○ 실증목표 검증, 사업계획서 기반 지원자금 확정</li> </ul>
수행기관 (실증사업 참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력 검증·실증 추진</li> <li>○ 실증 사업 진행현황 및 중간·결과 보고</li> <li>○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정산 결과보고 등</li> </ul>

### 3

## 추진절차

추가 모집공고	4월 4주 ~ 5월 2주	[인천테크노파크] · TRYOUT 민간 실증사업 추가 모집공고 시행
(1단계) 서류검토	5월 3주	[인천테크노파크] 사업담당자 · 제출서류, 신청자격, 사전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 검토 ※ 선정기업수의 3배수 이상 신청시 별도 서류평가 추진 ※ 서류심사 통과기업에 대하여 중복지원 검토(타기관 공문 발송)
(2단계) 서류, 발표평가	5월 4주~5주	[인천테크노파크] ↔ 평가위원회 · 실증 참신성, 검증 신뢰성, 성과 활용성, 실증 상용화, 사업비 편성 적절성 등 실증 사업내용 평가
(3단계) 협력파트너 의견검토	6월 1주~2주	[인천테크노파크] ↔ 협력파트너 ·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파트너 의견검토 * 협력파트너 내부부서 협의 등 실증매칭 확정
사업비 심의위원회	6월 3주	[인천테크노파크] ↔ 사업비 심의위원회 · 실증사업 사업비 심의 및 확정 · 예산규모, 실증사업내용 적정성 등을 고려한 심의(조정)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6월 4주	[인천테크노파크] ↔ 수행기관(참여기업) · 평가결과 및 사업비 심의(조정)결과 통보 · 실증사업 사업비, 수요기술 및 실증자원 매칭 확정
수행기관 지원 및 실증사업 추진	7월 1주~11월30일	[인천테크노파크] ↔ 수행기관(참여기업) · 협약체결일로부터 11월말까지 실증사업 추진 · 운영지원기관 자체프로그램(투자 등) 연계
실증사업평가 및 사업비 정산	12월 말까지	[인천테크노파크, 운영지원기관] ↔ 수행기관(참여기업)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최종성과공유회 개최

※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참가현황 및 평가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II. 사업 세부내용

### 1 지원사항 및 지원유형

#### □ 지원대상

- 핵심기술 및 실증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을 활용한 실증 희망 기업
- 창업 7년(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
- ※ 인천 소재 본점·연구소·공장 보유 기업 선정, 관외 기업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본점·연구소·공장 중 1개소 이전 필수(업력 10년 이상 기업은 자부담 참여 시 지원 가능)

#### □ 지원내용

-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실증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픈이노베이션형, 실증자원매칭형 참여에 필요한 실증비용(인건비, 설치비, 철거비, 재료비 등) 지원
- ※ (2개 파트너 중복 선정 시 1개 선정 프로그램만 참여 가능(선택) 단, 2개중 1개 자부담 실증 진행 시 2개 파트너 프로그램 모두 참여 가능)

#### □ 지원유형

- (실증자원 매칭형) 협력파트너에서 제공하는 실증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에서 보유한 기술 및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과제를 자율적으로 제안
- (오픈이노베이션형) 협력파트너의 현안해결을 위한 수요기술을 선택하여 기업의 기술 및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증사업 제안

#### < 실증사업 지원유형 >



□ 지원기간 및 예산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년 11월 30일까지
- (지원예산) 지원금 3억원 내외(협력파트너당 1~3개사 내외 / 평균 30백만원)

□ 추가지원사항

- (협력파트너 프로그램 연계) 인천스타트업파크 협력파트너(인천대, 인하대) 지원프로그램 연계 추가지원 가능

구분	주요내용	
선정기업 기본지원	· 사업비 심의위원회의 실증계획에 대한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최대5천만원)	
선정기업 추가지원	· 실증기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협력파트너 사업과 연계한 기업지원비 추가 및 실증인프라 활용 지원	
	파트너	주요내용
	인천대	·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연계 환경 분야 실증 참여기업중 심의를 통해 실증자금 매칭 지원(간접지원방식)
인하대	· 인하대 초기창업패키지 프로그램 참여기업 선정 시 참여기업 실증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기술요건)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 및 서비스(시스템, SW, 장비 등)가 TRL 5단계\* 이상이며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 해야함(붙임1 참조)  
※ TRL(기술성숙도) 5단계 이상 수준의 제품 및 서비스 판단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실증 성과지표) 제품 및 서비스 검증·실증의 기술성과 상용화 관련 자체 발굴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목표 3개 이상 필수 제시
- (민간부담금 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은 지원금의 10% 이상 민간 부담금으로 부담 하여야 함(붙임2 참조)

○ 총사업비: 33,000,000원
○ 지원금: 30,000,000원, 민간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
→ (예시) 지원금 30,000,000원 + 민간부담금(10%) 3,000,000원*
*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10%(3,000,000원) 이상 매칭

- (보증보험증권) 수행기관 및 예산 확정 후 협약체결 이전 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협약종료일 +90일)

□ 민간 협력파트너 수요기술(오픈이노베이션형) ※붙임3 참조

구분	수요기술명
기아	IoT 기반 공장 냉난방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일반 업무차 및 청소차 부착형 마그네틱 스위퍼 기술
	체결공구에 사용되는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RFID 기반 차량 사양 부품 자동 검사 시스템
	설비 부품 재고 모니터링 시스템
	조립라인 보전DX 분석 솔루션
	폭설대응 제설 시스템 개발
	프레스 공정~완성차 내 코일-블랭킹-소재-후공정 간 데이터 연동을 통한 연쇄 추적 통합 LOT 트래킹 시스템 구축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의 실제 사용 테스트
	지속가능한 공급망(SSCM), 전과정평가(LCA)와 관련된 탄소배출 저감 솔루션
한림제약	신약 물질 실증 및 공동 연구
GS칼텍스	GS칼텍스 주유소 Network 및 자산(유희 부지 & 공간 포함)을 활용한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실증
LG사이언스파크	휴머노이드 플랫폼의 캠퍼스내 Co-living 실증(이동 및 미션 등) 또는 LBM(Large Behavior Model)을 위한 행동 데이터 학습 실증
	로봇 플랫폼 구동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의 성능 실증
SSG랜더스	관람객 안전관리 전문화 기술

□ 민간 협력파트너 실증자원(실증자원 매칭형) ※붙임3 참조

지원내용	세부내용	
실증자원	SSG랜더스	SSG랜더스필드 인프라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전문가 및 인프라(별도 협의)
	GS칼텍스	인천/경기 직영주유소 네트워크 및 자산(유희부지, 공간 포함) 7개소
	LG사이언스파크	LG사이언스파크 22개 연구동 및 계열사(팜한농, 안성공장, 연암대) 인프라, 8개 계열사 내부 데이터
	한림제약	한림제약 바이오 전문가(기초제형, 원료합성 및 생산공정), 플랫폼 기술(안구이식제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기아	기아 Autoland 화성, 기아 Autoland 광명 EVO Plant 내 생산공장, 기아 Autoland 광주 공장 내 체결공구 사용 배터리

※ 실증맵(<https://startuppark.kr/proof/map/view.do>)을 통해 21년~25년 실증자원 및 실증사례 참조하고 실증 추진 시 활용되었던 실증자원(공간, 인프라 등)협의 후 제공 가능

□ 지원 제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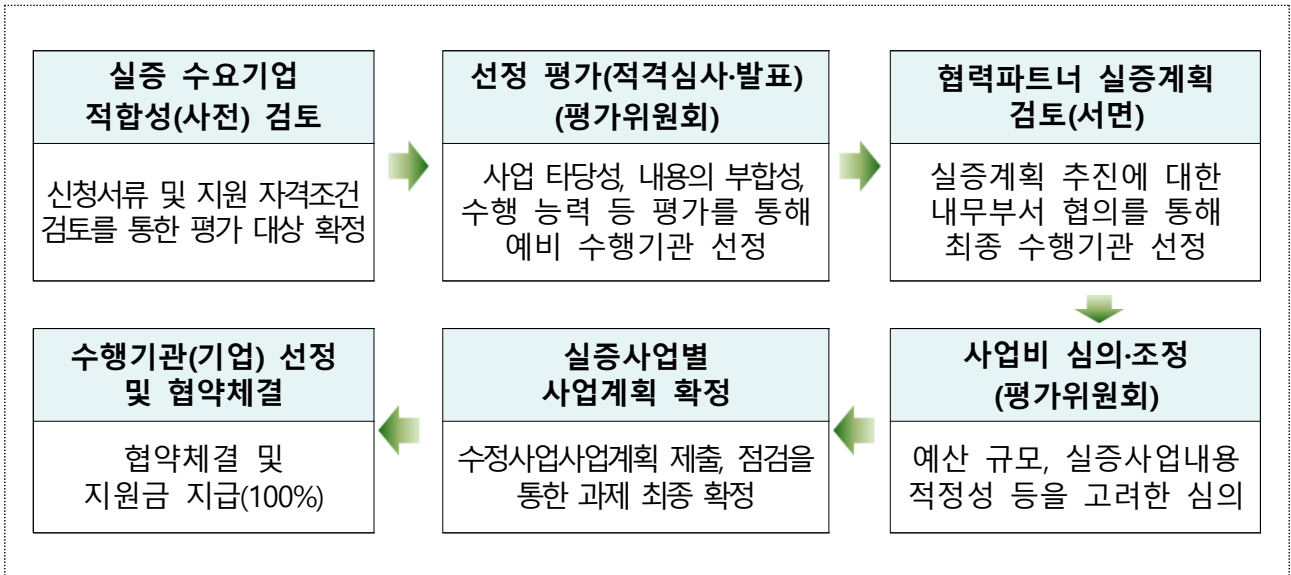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및 인천시(공기업, 산하기관 등)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거나 실증 목표 및 제품 등의 중복성이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실증사업 신청이 불가함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는 실증사업 신청이 불가함
- 신청 내용이 실증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실증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실증사업 종료 시한 이내에 실증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실증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실증 사업 신청기업이 사전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

구분	사전지원 제외대상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절"

## 2

## 수행기관 선정절차

- (평가절차) 사업계획서의 적합성(사전) 검토 및 적격심사·발표 평가, 사업비 심의·조정(평가위원회)을 통해 최종 확정



### □ 적합성(사전) 검토

- (검토대상) 접수 '완료'된 신청기업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중복지원 여부 조사 등을 통한 적합성 검토
- (검토위원) 인천테크노파크 사업담당자

### □ 선정평가 (적격심사 및 발표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된 참가기업
  - ※ 실증 신청기업이 선정기업 목표수의 3배수 초과 신청 시 별도 서류평가 추진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 소수점 첫째자리(둘째자리 반올림)까지 산정
- (평가위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최소 5인이상) 내외의 외부 위원(협력기관 등)으로 평가위원 구성 \*전담기관 내부규정 적용

- (평가기준) 실증의 참신성, 검증 신뢰성, 성과 활용성, 실증결과물에 대한 확산(협력파트너 연계 등) 및 파급성 등 평가(서류·발표 동일)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정성적 평가 (80점)	①실증참신성	○ 실증의 필요성 및 목표의 구체성, 실증의 참신성 ○ 실증제품 및 서비스의 기 상용화 여부 검토	20
	②검증신뢰성	○ 실증 목표의 달성 가능성 및 검증 방법의 신뢰성 ○ 실증 진행 시 법제도, 안전 등 대응 방안	20
	③성과활용성	○ 참여기업의 실증성과 활용 방안 ○ 실증자원 활용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20
	④실증상용화	○ 실증 기대효과, 파급효과 등 성장 가능성 ○ 실증결과 확산(협력파트너 연계 등) 및 상용화 방안	10
	⑤사업비설정 적절성	○ 사업계획서 내 실증비용(지원금) 설정에 대한 적절성	10
정량적 평가 (20점)	민간부담금 현금매칭	○ 25%초과(10점), 20%이상(9점) 15%이상(8점), 10%이상(7점)	10
	지역업체	○ 공고일 기준 인천소재 본점(10점), 연구소(9점), 공장(8점) 그 외 관외기업(5점)	10
<b>합계</b>			<b>100</b>

※ 동점자 발생시 평가항목 ①→④→②→③→⑤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함

### ○ 선정기준

- 5인의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 소수점 첫째자리(둘째자리 반올림)까지 산정
- 70점 이상 고득점 순위로 선정기업 및 예비기업 선정, 단 선정기업 중 협력파트너의 추가 검토에 따라 미선정 될 수 있음
- 실증 사업 운영 요령 제6조를 준용하여 관내기업(이전 협약 기업) 우선 선정
- 선정 후 선정과제의 타 지원사업 중복지원, 중도포기 등을 대비하여 '적격'대상에 한해 예비과제로 선정(협력파트너별 3개사 내외)

※ 예비과제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함(기간 내 선정과제의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협약 추진)

- 통보방법: 선정기업 개별 통보

### □ 협력파트너 실증계획 검토

- (검토대상) 평가를 통해 '선정(예비)'된 참가기업(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
- (검토방법) 실증계획에 따른 실증자원(공간, 인프라 등) 활용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필요시 관계자 간담회 병행)하여 가능여부 회신(서면)
  - ※ 평가결과 안내(인천TP)→실증가능여부 검토(협력기관)→검토결과 회신(협력기관)
- (결과활용) 신청기업 대상 선정결과 및 향후일정 안내

### □ 사업비 심의위원회 개최

- (사업비 심의·확정) 사업비심의위원회에서 평가의견 반영 및 실증계획, 예산배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과제별 예산 조정·확정
  - ※ 사업비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은 지원대상기업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수행기관과 협의 진행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체결) 심의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예산) 확정\* 및 협약체결
  - \* 평가의견을 반영한 실증계획(절차, 방법, KPI 등) 및 사업예산 등 수정·보완
- (사업비 지급) 협약체결 이후 수행기관(기업) 실증지원금 청구에 따른 100% 실증지원금 지급

## 3

## 사업 운영사항

### 2026 TRYOUT 실증 프로그램 연간 운영 및 관리 체계

					
<b>■ Kick-off</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실증계획 및 사업 관리 사항 공유</li><li>· 협약체결 후 2주 이내(5월 중)</li><li>· 착수보고, 사업비 사용 및 정산절차 안내</li><li>· 월간·최종보고 일정 안내</li><li>· 참석: 전담기관, 협력파트너, 운영기관, 수행기관</li></ul>	<b>■ 운영보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운영기관 운영 추진현황 점검 및 관리</li><li>· 매주 주간보고 취합(3월~)</li><li>· 실증 진행상황 및 협력파트너 이슈 관리</li><li>· 판로확보·투자유치 등 연계 프로그램 점검</li></ul>	<b>■ 중간점검</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실증현황 및 완료 가능성 점검</li><li>· 협약 후 100일 이내(8월~)</li><li>· 현장 방문 점검</li><li>· 미진기업 협약 취소·주의 조치</li></ul>	<b>■ 성과공유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6년 실증 수행결과 공유</li><li>· 우수기업 발표 및 시상</li><li>·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12월 15일)</li><li>· 참석: 총괄, 전담, 협력파트너, 수행기관</li></ul>	<b>■ 사업비 정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증</li><li>· 회계법인 검토 후 반납금액 확정</li><li>·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2월 30일)</li></ul>	<b>■ 설문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li><li>· 보완·개선점 도출</li><li>· 차년도(27년) 사업계획 수립 반영</li></ul>

□ Kick-off

- (추진목적) 실증계획 공유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공유
- (추진시기) 협약체결 후 2주일 이내(5월 중)
- (참석대상) 전담기관, 협력파트너, 운영기관, 수행기관(실증기업) 관계자
- (주요내용) 수행과제 착수보고, 사업비 사용 및 정산절차 안내, 월간 보고, 최종보고 등 사업수행 절차 및 일정 안내 수행

□ 운영보고

- (추진목적) 실증사업 참여 수행기관 추진현황 점검 및 관리
- (추진시기) 운영지원사 선정 후 매주 주간보고 취합 점검(3월~)
- (주요내용) 수행기관 실증 진행상황, 협력파트너 실증 이슈사항 및 운영지원사 자체 프로그램 연계(판로확보, 투자유치 등) 현황 점검

□ 중간점검

- (추진목적) 수행기관 실증현황 및 완료 가능성 점검
- (추진시기) 수행기관 선정, 협약 체결 후 100일 이내(8월~)
- (주요내용) 주관기관, 운영지원사 현장 방문, 중간점검항목 확인 후 미진 기업 협약 취소, 주의 등 성공적 실증 완료를 위한 현황 확인

□ 성과공유회

- (추진목적) 26년 TRYOUT 실증사업 성과 공유
- (추진시기) 사업종료일(11월 30일) 후 15일 이내(~12월 15일)
- (참석대상) 총괄, 전담, 협력파트너 관계자 및 수행기관 대표, 임직원
- (주요내용) 26년 실증 수행결과 공유 및 실증 우수기업 발표, 시상 등

□ 사업비 정산

- (추진목적)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증 및 정산사업비 반납절차 이행
- (추진시기) 사업종료일(11월 30일) 후 1개월 이내(~12월 30일)
- (주요내용)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회계법인이 검토하여 최종 반납금액 확정,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

□ 설문조사

- (추진목적/시기) 27년 사업계획수립 활용/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12월 30일)
- (주요내용) 사업 만족도 조사, 보완·개선점 도출

### Ⅲ. 신청서 제출안내

#### 1 신청방법

##### □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안내

##### ○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인천스타트업파크 누리집(www.startuppark.kr)→지원사업→TRYOUT 민간 실증사업→사업계획서 다운로드 후 작성

##### ○ 공고 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기간) 공고일 ~ '26. 5. 8.(금) 17:00 까지
- (신청서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공고 마지막날 17시까지

구분	프로그램명	협력파트너	모집 규모
민간 협력파트너	Smart-X Sports	SSG랜더스	협력파트너당 1~2개사 내외
	Smart-X Pharmacy	태전그룹	
	Smart-X Mobility	현대모비스	
	Smart-X Energy	GS칼텍스	
	Smart-X Global	포스코인터내셔널	
	Smart-X Eco	LG사이언스파크	
	Smart-X Bio	셀트리온	
	Smart-X Bio	한림제약	
	Smart-X Bio	삼성바이오로직스	
	Smart-X Manufacturing	기아	
	Smart-X Insurance	DB손해보험	
	Smart-X Space	호반건설	
	Smart-X MaaS	카카오모빌리티	
	Smart-X EcoPlant	SK에코플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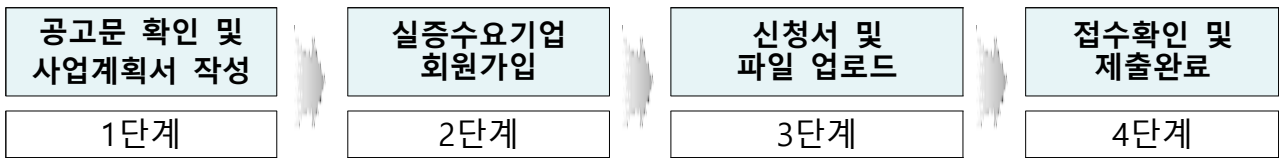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인천스타트업파크 누리집)

- 실증사업 신청은 스타트업파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
- ※ 온라인신청 및 입력 안내는 인천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http://startuppark.kr) 누리집 매뉴얼 참고

##### ○ 주의사항

- ① 누리집(<http://startuppark.kr>)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 제출(100mb 이내 .zip파일)
- ②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실증사업 접수요망
- ③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④ 시스템 오류로 이메일 제출 시에는 오류 증빙(시간이 나오는 오류화면 전체화면 캡처)과 제출서류 일체를 압축하여 제출
- ⑤ 사업계획서-발표자료 모두 하기 제목으로 변경하여 제출 필수

[제목] 2026년 민간 실증사업(참여 협력파트너사) 기업명



□ 제출서류 : 공문 및 사업계획(신청)서(부속서류 포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필수

	필수 첨부 서류 목록	형태	비고
1	실증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별도 분리 없이 하나의 파일로 제출	한글	서식 1
2	실증사업 발표자료 * 대용량일 경우에는 이메일로 별도 제출	PPT	자유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PDF	서식 2
4	실증사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서식 3
5	사업장(소재지) 이전 및 유지약약서 * 사업장(소재지) 중 연구소, 공장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포함 필수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공장: 공장등록증명서 등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PDF	서식 4
6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PDF	서식 5
7	청렴서약서	PDF	서식 6
8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일 이후 등록분)	PDF	-
9	법인등기부등본 1부(공고일 이후 등록분)	PDF	-
10	국세·지방세·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았거나 공고일 이후 발급분	PDF	-
11	TRL 5단계 이상 증빙자료 - 실험 테스트 결과서, 제품 및 서비스 실물사진, 시험성적서, 기술개발 결과서 등	PDF	-

## 2

## 사업 유의사항

### □ 적용규정

- 실증사업 관련 수행절차, 평가, 협약체결, 사업비 집행, 성과관리 등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사업 운영 요령」 적용함

### □ 사업비 편성 및 관리

- 실증사업 수행기관은 사업비(지원금 및 자체부담 현금)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 인건비는 실증에 꼭 참여한 인력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H/W(제품·장비 등 하드웨어 실증)의 경우 20% 이내, S/W(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실증)의 경우 60%이내로 총 사업비 내 산정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불인정(대표자 인건비 편성 불가)
- 사업비로 참여기업의 제품, 시스템, 서비스 구매 등 내부 거래 불가
- 사업비 편성 시 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 산정 필수
  - ※ 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 산정기준은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사업 운영 요령 준용
- 운영비(복리후생비), 여비(국내여비/국외여비는 실증 사업 시 전담 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평가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지원금 등)는 조정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세부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실증사업 수행 및 관리

- 사업 종료 시 실증수행 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업비 정산 회계검토 보고서, 전담기관 요청자료 등 제출
- 전담기관에서 현장실사 및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수행기관은 진행현황 보고서, 사업비 사용내역, 기타 요구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기간 중 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예산)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담기관과 협의(승인) 필요

※ 사업계획변경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 또는 승인된 건만 인정

□ 개인정보보호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측면의 준거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참고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제공받은 또는 수집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파기·비식별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공공, 민간, 대학 실증사업은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다수 선정될 시 1개 과제만 참여 가능

\* 단, 공공민간 프로그램에 한하여 다수 선정 시 1개 프로그램만 지원금 지급, 타 사업은 실증자금 자부담 시 참여 가능

- 실증 수행기관은 공모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증 수행기관은 인천스타트업파크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사용 등록하여 협약정보관리, 집행예산관리, 사업계획 변경신청 관리, 산출물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관련 매뉴얼은 실증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배포 예정

- 실증사업 종료 후 전담기관에서 추진하는 성과 및 실적조사(매출, 고용, 투자, 지재권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실증사업 종료 연도부터 3년간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전담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함

※ 보고서에는 일자리 창출 현황과 관련 증빙 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당해 회계 연도 기준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위탁정산기관)에 정산검증을 받아야 함

※ 사업비 정산절차는 실증사업 착수보고 진행 시 전담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서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제품을 실증하는 사업특성상 실증사업명 및 사업계획서 등에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등의 문구가 아닌 실증으로 작성하여야 함
- 실증사업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포기 시 추후 전담기관 및 스타트업파크 지원사업 참여제재 가능함
- 인천 관외 기업이 실증 지원을 받는 경우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개소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것을 약속해야 하며 미이전시 지원금 100% 환수함

### 3

### 문의처

사업담당 부서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아, SSG랜더스, 현대모비스, LG사이언스파크, 한림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프로그램 담당</li><li>- 김민기 과장(032-228-1209 / mkikim@itp.or.kr)</li></ul>

## 붙임자료 ① 기술성숙도(TRL) 단계별 정의 및 요구사항

구분	단계	정 의	세부 설명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 기준) 파일럿 설비를 구축
	6	파일럿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파일럿 규모(복수 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 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 ○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규범)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럿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허가
사업화	9	사업화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 붙임자료 ② 신산업 창업 분야

### 법 령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30.][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2024. 1. 30,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설정 및 그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세부분야

####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스마트제조
⑨	시스템반도체
⑩	자율주행차
⑪	전기수소차
⑫	바이오
⑬	의료기기
⑭	기능성 식품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티
⑲	스마트홈
⑳	신재생에너지
㉑	이차전지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㉔	우주
㉕	차세대 원전
㉖	양자
㉗	사이버 보안